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주택차액 납입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납입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연금계좌 정보	기관	⑤ 법인명(상호)		⑥ 지점명	
	계좌	⑦ 연금계좌구분		⑧ 계좌번호	

1. 연금계좌 납입한도 명세	일반 납입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제1호가목)	⑨ 연간 납입 한도액	⑩ 해당 연도 기 납입액	⑪ 잔여 납입 한도액 (⑨ - ⑩)
		1,800만 원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추가납입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제1호다목·라목)			
		⑫ 생애 납입 한도액	⑬ 기 납입액	⑭ 잔여 납입 한도액 (⑫ - ⑬)
		1억 원		

2.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주택차액등 명세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계산	⑮ 연금주택(기존주택)의 양도가액	⑯ 축소주택(신규주택)의 취득가액	⑰ 주택차액 (⑮ - ⑯)
		⑱ 연금부동산 취득가액	⑲ 연금부동산 양도가액	⑳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⑲ - ⑱)
	연금계좌 납입대상 금액	㉑ ⑰ 및 ㉒의 금액 중 연금계좌 납입 금액		
		⑪의 한도액에 납입하는 금액		⑭의 한도액에 납입하는 금액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 위해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납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금계좌취급자 귀하

첨부서류	1. 주택차액 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 가. 1주택 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나.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다.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주택 또는 축소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 가. 1주택 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나.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 다.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연금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
------	---

작성 방법

- ⑩ 해당 연도 기 납입액란: 해당 연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에 따라 전환납입한 금액과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⑮ 연금주택(기존주택)의 양도가액란, ⑯ 축소주택(신규주택)의 취득가액란, ⑰ 연금부동산 취득가액란 및 ⑱ 연금부동산 양도가액란: 연금주택, 축소주택 및 연금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적되,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매매가액(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납입 신청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㉑ ⑰ 및 ㉒의 금액 중 연금계좌 납입 금액란: ⑰ 주택차액란 및 ㉒ 연금부동산 차액란에 적힌 금액 중에서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금액을 적되, 일반 납입한도 잔여분(⑪란)에 납입을 희망하는 금액과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추가납입한도 잔여분(⑭란)에 납입을 희망하는 금액을 구분해서 적습니다.